

**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**  
**일부개정법률안**  
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112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2.

발 의 자 : 고동진 · 윤한홍 · 박정하  
서범수 · 김도읍 · 김소희  
정성국 · 강승규 · 안상훈  
송석준 · 이인선 · 김상훈  
박덕흠 · 성일종 · 김재섭  
주진우 · 안철수 의원  
(17인)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, 기술개발 및 설계 · 제조 · 공급 · 연구 · 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.

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필요한 평가 기준이나 지표의 설정, 평가 결과의 공개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 · 운영하여야 하며,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

함으로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  
임(안 제11조제7항 신설).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
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·운영하여야 하며,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반도체클러스터 지정에 관한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</p> <p>제11조(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)</p> <p>① ~ ⑥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| <p>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</p> <p>제11조(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)</p> <p>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·운영하여야 하며,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|
| <p>⑦ (생략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